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27

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이달희·주호영·서천호

이인선 · 김위상 · 최은석

김상훈 · 나경원 · 서범수

강선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북한에서 오물을 담은 풍선을 대한민국 영공으로 보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, 재산상의 피해를 입 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, 다양화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'오물풍선'을 살포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테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공중에게 정신적·심리적 공포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·폭발성·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풍선, 경량항공기 및 초 경량비행장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 여 '오물풍선'과 유사한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, 국민의 정신적·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라목).

법률 제 호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라목 중 "사망·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"을 "사망·중상해·중대한 물적 손상 또는 공중에게 정신적·심리적 공포를"로, "차량 또는 시설"을 "차량·시설·기구 등"으로 하고, 같은 목에 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) 풍선,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용될 수 있는 기구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	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	
1. "테러"란 국가·지방자치단	1			
체 또는 외국 정부(외국 지방				
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				
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				
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)의				
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				
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				
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				
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.			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	
라. <u>사망·중상해 또는 중대</u>	라. <u>사망·중상해·중대한 물</u>			
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	적 손상 또는 공중에게 정			
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	<u>신적·심리적 공포를</u>			
력을 가진 생화학 · 폭발성				
・소이성(燒夷性) 무기나				
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				
하나에 해당하는 <u>차량 또</u>				
<u>는 시설</u> 에 배치하거나 폭	<u>차량·시설·기구</u>			
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	<u> 등</u>			
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				

]	[) ~	5)	(생	략)
<신	설>			

마. (생략) 2. ~ 8. (생략)

- 1) ~ 5) (현행과 같음)
- 6) 풍선, 「항공안전법」
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
 항공기 및 같은 조 제3
 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
 치 등 물건의 운송에 이
 용될 수 있는 기구

마. (현행과 같음)

2. ~ 8. (현행과 같음)